

제15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2006년 3월 28일 (화) 10시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교통공사 부사장 폐지 및 파견공무원 부사장 임명취소 청원의 건
5. 201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심사안건

1. 부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조례안(시장 제출) 2
2.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
3.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4. 부산교통공사 부사장 폐지 및 파견공무원 부사장 임명취소 청원의 건(박주미 의원의 소
개로 제출) 17
5. 201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22

부 록

- 부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조례안 25
-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30
- 부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조례안 검토보고서 37
-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39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9
- 부산교통공사 부사장 폐지 및 파견공무원 부사장 임명취소 청원서 51
- 부산교통공사 부사장 폐지 및 파견공무원 부사장 임명취소 청원에 대한 보고서 60
- 부산교통공사 부사장 폐지 및 파견공무원 부사장 임명취소 청원 검토보고서 65
- 201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68
- 201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73

(10시 51분 개의)

○ 위원장 박현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녕기 건설방재국

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온누리에 봄기운이 가득한 신록의 계절을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과 항상 시정 발전

다음은 부산교통공사 부사장 폐지 및 파견 공무원 임명취소 청원의 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회)

○ 위원장 박현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산시 금정구 노포동 133번지 부산지하철해고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로부터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박주미 의원님의 소개로 우리 시의회에 지난 2006년 2월 23일 접수되고 동년 2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교통공사 부사장제 폐지 및 파견 공무원 임명취소 청원의 건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부산교통공사 부사장 폐지 및 파견공무원 부사장 임명취소 청원의 건(박주미 의원의 소개로 제출)

(15시 21분)

○ 위원장 박현옥 의사일정 제4항 부산교통공사 부사장 폐지 및 파견공무원 부사장 임명취소 청원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소개위원의 청원취지 설명을 들은 후 시측의 의견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원 소개위원이신 박주미 의원으로부터 청원 소개 취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미 의원께서 청원 소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미 의원 예. 반갑습니다.

저는 청원 소개위원 보사환경위원회 박주미 의원입니다.

박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에 부산지하철해고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로부터 이 내용을 보고 받고 또 청원을 하겠다 라는 의사를 받고 제가 소개위원으로

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취지는 사실 부산지하철이 국가에 의해서 경영되는 시대를 한 20년 정도 국가가 책임지고 경영하다가 청산하고 2006년 1월 1일부터 부산시에 의해서 경영하게 된 것은 부산 시민으로 볼 때 참으로 다행한 일이고 또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산교통공사가 부산시로부터 완전한 독립경영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산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 수단을 아우르는 기관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부산시의 인력적체를 해소하는 기관으로만 인식되거나 또 부산시 의회에서 거의 직영되다시피 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경우라도 법이나 조례는 준수되어야 합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시의회에서 제정된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인 이상 관련법령과 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의해서 경영되어야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이런 상식이 무시되고 부산시장이나 부산교통공사 사장의 임의적 판단에 의해서 경영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산교통공사에서 상식이 무시되고 경영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직 공무원의 파견 부사장 임용은 가장 잘못된 것입니다. 저의 청원의 경우처럼 공사 부사장제도는 정관에도 없습니다. 정관에도 없는 부사장 제도는 폐지되어야 하고 파견된 공무원은 시로 복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시의회가 이런 상식에 벗어난 경영을 일삼고 있는 부산교통공사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감시자로 나설 것을 제안드립니다.

어제 제가 시정질문 드리는 와중에도 이 내용이 잠시 언급이 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경청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조례가 가지고 있는 상임이사과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상임이사 숫자는 다릅니다. 정관은 조례에 근거해서 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님께서도 그 사항까지는 검토를 하지 못하고 인사발령을 하셨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심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 부산교통공사 부사장 폐지 및 파견공무원 부사장 임명취소 청원서
(박주미 의원의 소개로 제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현욱 박주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시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대 교통국장께서 시측의 입장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윤종대 반갑습니다. 교통국장 윤종대입니다.

박현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 소관 청원사항에 대한 심사 시간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교통공사 부사장 폐지 등 청원에 대한 우리 시의 검토사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청원의 개요, 청원항목별 보고, 우리 시의 종합적인 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부산교통공사 부사장 폐지 및 파견공무원 부사장 임명취소 청원에 대한 보고서
(교통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현욱 윤종대 교통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객사옥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객사옥 전문위원 객사옥입니다.

부산교통공사 부사장 폐지 및 파견 공무원 임명취소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

(참 조)

- 부산교통공사 부사장 폐지 및 파견공무원 부사장 임명취소 청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현욱 객사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박주미 의원님의 청원소개 취지를 설명했고 우리 또 교통국장으로부터 시측의 의견을 말씀하셨고 또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조 위원 국장님!

○ 교통국장 윤종대 예.

○ 김석조 위원 교통공사 정관 23조에 보니까 공사임원이 사장 한 사람하고 상임이사 네 분이죠?

○ 교통국장 윤종대 예, 그렇습니다.

○ 김석조 위원 그리고 비상임이사 10인 이내 및 감사 1인을 둔다. 이래 되어 있는데 상임이사 네 분이 말하자면 기획본부장하고 경영본부장, 운영본부장, 건설본부장 이래 네 분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 교통국장 윤종대 그렇습니다.

○ 김석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정관에 보면 부사장이란 말의 이름은 없거든요, 그렇죠? 정관에는.

○ 교통국장 윤종대 예, 그렇습니다.

○ 김석조 위원 그러면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기획본부장의 이름이 쉽게 말하면 부사장으로 이름이 나는 대치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상임이사 네 분 외에 부사장이 별도로 한 분 더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까?

○ 교통국장 윤종대 없습니다.

○ 김석조 위원 없죠?

○ 교통국장 윤종대 예.

○ 김석조 위원 그러면 말은 기획본부장이지만 사실상 기획본부장이 부사장을 대신하는

그런 뜻입니까?

○ **교통국장 윤종대** 그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만들 때는 공단으로 부사장제가 있었습니다, 직제에. 있었습니다마는 1월 1일자로 저희 시에 이관되면서 직제를 5개 계층이 있었습니다. 부사장, 이사 그 다음에 처장, 과 이렇게 해서 5개 계층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걸 통폐합을 했습니다. 통폐합을 해서 3단계로 축소를 했습니다. 축소를 하면서 부사장제를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를 하고 부사장도 본부장으로 그래서 이사 네 분을 똑같이 본부장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바뀌가지고 부사장제를 폐지를 해서 중간계층을 하나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슬림화를 시켰습니다.

○ **김석조 위원** 그런데 이야기는 그럼 지금 현재 기획본부장은 현재 누구입니까?

○ **교통국장 윤종대** 기획본부장은 오홍석 기획이사입니다.

○ **김석조 위원** 그럼 부사장은 누구라고?

○ **교통국장 윤종대** 부사장은 그런데 통상 안에서 예우차원에서 그냥 부르는 차원이지만 직제규정상 부사장제는 없습니다.

○ **김석조 위원** 그럼 없는데 뭐 하려고 부사장제 폐지 이런 말을 합니까?

○ **교통국장 윤종대** 그런데 공단으로 있을 때 부사장제가 있었던 것을 직제 규정을 바꿔서 3단계로 축소를 하면서 기획본부장, 부사장을 기획본부장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경영이사를 경영본부장 그 다음에 운영본부장을 운영본부장, 건설본부장은 건설본부장 이렇게 이사 네 분을 본부장제로 전환을 했었더랬습니다.

○ **김석조 위원** 그러면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기획본부장님의 위치를 우리가 편의상 부사장이라 부르고 있는 거지, 실제 내용적으로는 부사장이라는 위치하는 이런 것은 없다 이 말 아닙니까?

○ **교통국장 윤종대** 그렇습니다.

○ **김석조 위원** 그럼 기획본부장하고 현재 부사장 부르고 있는 그 자체하고는 직급이나 다른 이런 관계에서 변화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이름 명칭만 바꿔 부르고 있다 이 말이지요?

○ **교통국장 윤종대** 그렇습니다.

○ **김석조 위원** 상임이사 네 분 외에 별도로

로 부사장이 더 있는 것도 아니고...

○ **교통국장 윤종대** 아닙니다.

○ **김석조 위원** 상임이사 네 분 중에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우리가 편의상 쉽게 말하면 사장이 유보 시라든가 문제가 있을 때는 사장을 대신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기에 이사 본부장 네 분 중에서 한 사람을 편의상 우리가 부사장이라고 칭하자, 그 거다?

○ **교통국장 윤종대** 통상 부르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직제상 부사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김석조 위원** 그런 차원이지만 별도 부사장이라고 있는 것은 아니다?

○ **교통국장 윤종대** 그렇습니다. 종전에 있던 부사장이 종전에는 전체 업무를 총괄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사장에게 업무를 직접 기획업무를 분담을 시켜 가지고 업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기획하고 예산을 분담을 시켜 가지고 업무를 맡겼습니다. 맡겨서 조직을 슬림화 시켜 가지고 조직의 경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단계를 축소를 시켰습니다.

○ **김석조 위원** 그럼 이 앞에 있던 부사장과 지금 부사장은 전혀 다르죠? 같은 내용입니까? 직제 개편하기 이전에.

○ **교통국장 윤종대** 예. 직제 개편하기 전에는 사장 밑에 부사장으로 전체 업무를 총괄을 했습니다. 총괄을 했는데 이번에 개편을 할 때는 그 때는 부사장한테 업무가 분담이 안 됐었습니다, 전체 업무를 총괄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에 직제 개편을 할 때는 기획팀, 5개 홍보팀, 예산팀, 재무팀 해서 별도 업무를 떼어가지고 뒀습니다. 쥘 가지고 그 업무만을 관장하는 그래서 기획본부장 그 다음에 경영본부장, 운영본부장, 건설본부장 이렇게 조직을 개편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경영혁신을 한 겁니다.

○ **김석조 위원** 현재는 우리 조직개편에는 부사장이 없으니까 부사장제 폐지하자 할 이유가 하나도 없네요?

○ **교통국장 윤종대** 그렇습니다.

○ **김석조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현욱 예. 김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은 위원 소개의원한테 물어도 됩니까?

○ 위원장 박현욱 우리 국에.

○ 이상은 위원 국에만. 우리 직제부 규정에 제2장 구성원에 보면 제7조 상임이사 이렇게 해 가지고 보셨습니까?

직제규정 제7조.

○ 교통국장 윤종대 예.

○ 이상은 위원 여기에 상임이사에 보면 1항에 ‘상임이사는 부사장, 경영이사, 운영이사, 건설이사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제3장 조직에 내려가서 보면 ‘기구’ 이래 가지고 1항에 ‘본사는 기획본부, 경영본부, 운영본부, 건설본부’ 아닙니까?

이렇게 4개 본부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조직에. 그죠?

○ 교통국장 윤종대 예.

○ 이상은 위원 이 구성하고 조직하고 틀린 게 왜 그렇습니까?

○ 교통국장 윤종대 그래서 이게 2006년 1월 1일 규정을 제정을 하면서 이게 조례라든지 정관이라든지 다 부사장제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제외됐었는데 이게 직제 규정을 하면서 부사장이란 말을 착오에 의해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잘못, 뒤에 13조 기구가, 기구 위에 보면 부사장이란 제도가 없습니다.

○ 이상은 위원 그래 그 기구 조직에 13조에 기구에는 없고 제7조에는 상임이사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2장 구성원 7조하고 제3장 조직하고 이래 보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이 상임이사 제7조를 보면 부사장제도가 있는 것으로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방 우리 김석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들어 보면 이 4개 본부로 해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고 부사장이 없는데 직제규정에 의한 제7조 구성원을 보면 지금 부사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빨리 이 직제규정을 고쳐서...

○ 교통국장 윤종대 예. 정정...

○ 이상은 위원 고쳐서 여기에 이걸 부사장을 기획이사로 바꾸든지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착오부터 없애도록 해야 됩니다. 이걸 반드시 빨리 고쳐야 됩니다.

○ 교통국장 윤종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 이상은 위원 다음에 시 공무원 파견인사 철회요구에 있어서 우리 부산지방 공기업이 교통공사 말고 어디 어디 있습니까? 공기업이. 우리 부산시 공기업.

○ 교통국장 윤종대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공단, 부산의료원.

○ 이상은 위원 여기에도 우리 공무원이 지금 파견되어 있습니까? 금방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공단에도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 교통국장 윤종대 예. 의료원에도 나가 있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에도 종전에, 지금은 파견 공무원이 철회를 했습니다마는 작년 연말까지 도시개발공사에도 파견을 했었습니다.

○ 이상은 위원 그 도시개발공사에도 파견되어 있던 공무원이 왜 이제는 파견을 안 하고, 무슨 파견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교통국장 윤종대 그 때 당시에는 도시개발공사에 상당히 현안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현안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공무원을 파견을 해서 어느 정도...

○ 이상은 위원 그러니까 그 현안사항이 지금 다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필요없어졌다 이 말씀입니까?

○ 교통국장 윤종대 예.

○ 이상은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교통공사에도 현안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고 이렇다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됩니까?

○ 교통국장 윤종대 가능합니다.

○ 이상은 위원 공무원 파견을 안 할 수도 있다?

○ 교통국장 윤종대 그렇습니다.

○ 이상은 위원 어쨌든 교통공사가 빨리 흑자로 돌아서고 정상화가 되기 전까지는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좀 어렵겠다는 그런 말로 들리는데 꼭 정상화 되기 전이라도 어느 정도

시에서 관여하거나 시하고 유기적인 협조 없이도 충분히 교통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수용할 능력만 갖춰진다면 언제든지 파견은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 **교통국장 윤종대** 예. 그렇습니다.

○ **이상은 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그 파견 안 할 수가 없는 이유는 뭐 있습니까?

○ **교통국장 윤종대**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월 1일자로 정부로부터, 국가로부터 저희 시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영의 책임을 시장이 져야될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사전에도 인수를 받기 전에 인수의 원활을 위해서 파견을 해서 그 내용을 파악을 하고 부채라든지 경영이라든지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계층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를 하고 여러 가지 경영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시가 인수한 이후에 경영개선이라든지 원활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파견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 **이상은 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 비상임이사 임명요구 건이 있죠? 지금 비상임이사가 우리 조례상 10명 이내죠?

○ **교통국장 윤종대** 그렇습니다.

○ **이상은 위원** 지금 현재 몇 명이 임명이 되어 있습니까?

○ **교통국장 윤종대** 6명이...

○ **이상은 위원** 6명이 되어 있고, 10명 이내니까 6명 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비상임이사를 우리 조례규정상 좀더 10명 이내로, 아직까지 더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니까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 **교통국장 윤종대**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면서 지금 첫출발부터 정수를 다 채워서 출발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운영을 해가면서 좀 부족한 부분, 지금도 전문가들을 예를 들자면 변호사라든지 또는 회계사라든지 전문가들을 영입할 필요가 있을 때 영입을 해서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우선 정수를 다 충족시키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하다면 정수를 더 사외이사를 영입할 필요가 있

다면 영입을 할 예정입니다.

○ **이상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현욱** 이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원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현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원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내용을 김석조 위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조 위원** 김석조 위원입니다.

부산교통공사 부사장 폐지 및 파견공무원 부사장 임명취소 청원에 대한 우리 위원회 간의 의견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사장제도 폐지 요구는 부산교통공사 직제규정 제13조의 기구상에는 기획본부, 경영본부, 운영본부, 건설본부 등의 4개 본부장제로 소관 업무를 책임 운영토록 되어 있어 실제 기구상 임원 중 이사는 사장과 본부장, 4명 외 부사장은 없으며 다만 같은 규정의 제7조에 부사장이 있으나 이는 상임이사 4인에 대한 역할과 선임이사 구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 공무원의 파견인사 철회 요구는 시 공무원의 부산교통공사 파견은 부산교통공사가 추진하는 업무 자체가 우리 시와 부산교통공사간 유기적인 협조와 조정 지원 없이는 업무추진이 어려운 사항임을 고려할 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을 파견 조치함은 매우 적법하고 타당한 조치라고 여겨집니다.

비상임이사를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중에서 임명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부산교통공사의 상임이사 정수는 사장을 포함하여 5인이며 비상임이사는 직제규정 제8조에 의거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 당면적으로 시 재정관과 교통국장 등 2명, 위촉직으로 전문가 등 4명, 모두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조례와 직제규정에서 이사는 15인 이내까지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현재 이사는 11인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어 이는 관련 법규를 위배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부산교통공사 임원 전원의 등기요구에 대해서는 2006년 3월 1일 현재 임원 12명 전원에 대해서 등기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 중 부산교통공사의 임원 전원의 등기 및 임원 변경등기 2건은 이미 등기 완료되었으므로 청원의 목적이 달성된 상태이며 부사장제도 폐지 요구와 시 공무원 파견인사 철회 요구, 비상임이사 임명 요구 등 3건은 적법하게 처리되어 청원의 타당성이 없다고 여겨짐으로 청원심사규정 제10조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현욱 김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석조 위원께서 제안한 의견 내용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교통공사 부사장제 폐지 및 파견 공무원 임명취소 청원의 건은 김석조 위원님께서 보고한 대로 부산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대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

운데도 청원인을 대표해서 참석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교통공사 부사장제 폐지 및 파견 공무원 임명취소 청원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2010년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16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

박현욱 이상은 김석조 박극제
원정희 이해동

○ 청원소개의원

박주미

○ 출석전문위원

곽사옥

○ 출석공무원

〈건설방재국〉

건	설	방	재	국	장	안영기
건	설	행	정	과	장	김상주
도	로	계	획	과	장	노홍대
방		재		과	장	정중섭
건	설	안	전	시	험	사
				업	소	장
						박병호

〈교통국〉

교		통		국		장	윤종대
교		통	기	획	과	장	김규형
교		통	관	리	과	장	이종철

〈건설본부〉

건	설	본	부	장	김병희	
차				장	조승호	
총	무		부	장	김진복	
도	로	건	설	부	장	하정운
토	목	시	설	부	장	강창업
건	축	시	설	부	장	김영기
교	량	건	설	부	장	이용술
도	로	건	설	부		장민조

- 청원인
강한규
- 참고인
전한경 허재관

부산교통공사 부사장 폐지 및 파견 공무원 임명 취소 청원서

청 원 서

청 원 인

주소 : 부산시 금정구 노포동 133번지

성명 : 부산지하철해고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청 원 요 지

부산광역시의회는 “부산교통공사의 부사장제도는 경영진단의 결과에 따라서 폐지되어야 하며, 부산광역시장의 시 소속 2급 공무원(오홍석)을 부산교통공사의 부사장으로 파견인사조치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인사발령을 취소하고 부산광역시로 복귀시키고, 부산교통공사가 독립경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줄 것을 권고한다.”는 결의를 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청 원 사 유

부산시장은 2006년 2월 1일자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발령을 하면서 부산교통공사의 부사장 배영길에 대한 파견을 해제하고 대신 오홍석을 공사 상임이사 겸 부사장으로 파견발령하는 인사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1. 부산교통공사 부사장에 대한 인사권자는 부산교통공사 사장이 아니라 부산시장이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5항, 공사설치조례 제5조 제4항 및 정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사 사장이 임명하는 것이지만,

이번 인사의 경우처럼 파견공무원이 공사의 상임이사(부사장)가 될 수 있으려면 시장이 승인하는 수준을 넘어 그에 대한 인사권을 완전히 행사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사 임면권을 행사하는 자인 공사 사장이 전직 행정부시장으로써 낙하산인사된 점을 감안해본다면 이번 인사는 전적으로 시장이 행사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장이 인사권을 행사하였기에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가 가능했던 것이고, 공사 사장이 인사권을 행사했다면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원인사는 어렵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민간인 중에서 임명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2.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와 정관에 부사장이란 직제는 없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6조 및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은 공사정관에 규정하여야 하나, 교통공사는 이를 정관에 규정하지 않고 직제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통공사는 지방공사로써 같은 지하철을 경영하는 서울메트로나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경우처럼 교통공사설치조례나 정관의 어디를 보더라도 부사장제도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3. 부(이)사장은 이미 폐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2002년 1월 안진회계법인이 경영혁신 차원에서 공단에 대한 경영진단을 하면서 부(이)사장제도는 없어져야 하는 것으로 진단한 바 있었습니다.

교통공단 이관과 발전방안을 위한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의 경영진단도 부사장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폐지의 시기는 재임중이던 공단 부이사장의 임기가 끝나는 것과 동시에 하거나, 공단이 시로 이관되는 때를 시점으로 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4.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는 공무원파견을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 서울메트로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33조(공무원의 파견·겸임)

시장은 서울메트로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공무원을 서울메트로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서울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 제39조(공무원의 파견·겸임)

시장은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공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 제31조(공무원의 파견·겸임)

시장은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 제32조(공무원의 파견·겸임)

시장은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사정원의 10분의1의 범위 안에서 그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 제28조 (공무원의 파견·겸임)

시장은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다른 지하철(도시철도)공사들은 조례에서 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사항을 모두 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공사는 공사설치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당시(2005. 7. 20 - 8. 9)에 제27조에서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수준정도로 공무원 파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하였으나 노동조합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반대의견에 따라서 이 부분 없어졌으며, 지금의 교통공사설치조례는 공무원파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5. 공무원을 파견하는 목적이 부적절합니다.

시장이 교통공사에 2급 공무원을 부사장으로 파견한 것은 그가 공사 임원으로서 교통공사를 직접 경영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파견근무가 가능한 어떤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 (파견근무)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당해 지방자치단체외의 기관·단체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의 업무 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3. 사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업무수행·능력개발이나 지방정책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이럴 경우 임원의 임기 3년은 보장되지 못합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9조 제1항, 공사설치조례 제5조 제5항 및 정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들의 임기는 3년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사의 3년 임기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부산시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공사의 상임이사인 배영길 부사장의 경우는 3년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통용된다면 앞으로 공사 임원들에 대한 3년 임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7. 부사장 임기(3년)는 지방공무원법이 허용하는 최고 파견기간(2년)을 상회합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파견기간은 최고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사 상임이사는 공사설치조례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의 임기가 보장되어야 하는 관계로 상임이사 임기 3년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파견기간 2년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직 공무원에 대한 3년 임기의 공사 부사장 임명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8. 파견공무원 부사장제도는 그 정체가 애매모호합니다

교통공사는 정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이사 4인과 비상임이사를 10인 이내로 둘 수 있습니다.

배영길이나 오홍석 부사장의 경우처럼 파견공무원이 공사의 이사를 맡을 경우 그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정관의 규정에 의하면 비상임이사 중에서 당연직이사는 시의 교통국장과 재정관으로 한정하고 있고, 위촉직이사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교통국장이나 재정관을 제외한 파견공무원은 비상임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비상임이사를 하지도 못하는 조건에서 상임이사는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임이사는 정관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하는 이사인 점을 고려한다면, 파견공무원에 의한 상임이사는 더더군다나 불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홍석 부사장은 뭔가?」라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데, 분명한 것은 파견공무원에 의한 교통공사 부사장직 수행은 이(비상임이사)도 저(상임이사)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9.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교통공사 상임이사 내지 부사장제도가 부산시 소속 파견공무원에 의하여 운영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 공사 이사에 대한 임면권은 공사 사장이 가져야 되지만 실제로 부산시장이 가지게 될 것입니다.

나. 부산시장이 공사 임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한 파견공무원 상임이사는 공사 임원으로써 3년 임기를 보장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다. 교통공사의 임원은 3년 임기에 관계없이 실제적 임용권자인 부산시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 교통공사의 경영은 부산시장의 개인적 성향에 의하여 좌우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교통공사의 독립경영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마. 교통공사의 안정된 경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고, 이런 현상이 반복될 경우 교통공사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10. 공사 임원현황과 관련법령 위반

교통공사의 임원은 공사설치조례 제5조 및 정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 1인, 상임이사 4인, 당연직 비상임이사 2인(부산시 교통국장과 재정관), 위촉직 비상임이사 8인 이내를 두어야 하며,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49조 제6호가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성명과 주소를 등기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2006년 2월 18일 현재 공사가 등기를 하고 있는 이사는 사장 1인(김구현), 상임이사 4인(배영길, 김인환, 김문화, 박봉진), 당연직 비상임이사 2인(윤종대, 이용호)으로 총계 7인입니다.

그리고 임원의 변경에 따라 등기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2조가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이 있는 때로부터 2주일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2조 위반

등기된 이사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2조가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된 때로부터 2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사는 부사장 겸 상임이사가 배영길에서 오홍석으로 변경되었어도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2조가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2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위반

공사 사장이 신고한 등기에 의할 경우 공사의 이사는 사장을 포함하여 모두 7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수는 5인으로 지방공기업시행령 제55조 제2항이 규정하는 사항(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을 위반하여 전체 이사정수에서 약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 원 사 항

시의회의 결의로 부산시장과 부산교통공사 사장에게 다음 사항을 시정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조례와 정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부사장제도는 폐지하여야 한다.
2. 부산시장은 부산교통공사에 부사장으로 인사발령한 오홍석의 파견조치를 취소하고 부산시로 복귀조치하여야 한다.
3.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시의회 의결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8인의 위촉직 비상임 이사를 정관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4.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49조 제6호가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 임원 전원의 성명과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5.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참 고 자 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기업법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
서울특별시메트로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
대구광역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
부산교통공사정관
서울특별시메트로정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정관
대구광역시지하철공사정관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정관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정관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안 입법예고
경영진단보고서
부산광역시 4급이상 인사발령
부산교통공사등기부등본

첨 부 서 류

주민등록초본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안 입법예고
경영진단보고서
부산광역시 4급 이상 인사발령
부산교통공사등기부등본

2006년 2월

위 청원인(선정대표자) : 부산지하철해고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강한규)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귀중

청원 소개의견서

청원건명	부산교통공사 부사장 폐지 및 파견공무원 부사장 임명취소			
청원인	주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 133번지 노포차량기지내		
	성명	부산지하철해고자 원상회복투쟁위원회	주민등록번호	
소개의원	박 주 미 (인)			
소개년월일	2006년 2월 18일			

[소개의견]

20여년의 역사를 가진 부산지하철이 국가에 의하여 경영되는 시대를 청산하고 부산시에 의하여 경영될 수 있게 된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부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축하할 일입니다.

그러나 부산교통공사가 부산시로부터 완전한 독립경영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산시민을 위한 대중교통수단을 아우르는 기관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부산시의 인력적체를 해소하고 시 고위 공무원들의 휴양소 정도로 인식되거나 부산시에 의하여 거의 직영되다시피 하고 있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법이나 조례는 준수되어야 합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시의회에서 제정된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인 이상 관련법령과 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영되어야 하는 상식입니다.

그런 상식이 무시되고 부산시장이나 부산교통공사 사장의 임의적 판단에 의하여 경영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산교통공사에서 상식이 무시되며 경영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현직공무원의 파견 부사장 임용은 가장 잘못된 것입니다.

소개하는 청원의 경우처럼 공사 부사장제도는 폐지되어야 하고 파견된 공무원은 하루빨리 시로 복귀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 시의회가 상식이 없는 경영을 일삼고 있는 부산교통공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감시자로 나설 것을 제안드립니다.

부산교통공사 부사장 폐지 및 파견 공무원 임명 취소 청원에 대한 보고서

「부산교통공사 부사장제도 폐지 등」
청원에 대한 보고

부산지하철해고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강한규가 부산교통공사 부사장제도 폐지 등 부산교통공사와 관련하여 시의회에 청원한 사항 보고임

I. 청원 개요

- 청원일자 : 2006.2.24(금)
- 청 원 인 : 부산지하철해고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강한규
※ 소개의원 : 보사환경위원회 박주미 의원
- 청원요지 : 시의회 결의로 부산시장과 부산교통공사 사장에게
부산교통공사와 관련한 다음 사항 시정권고 요구
 - ① 조례와 정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부사장 제도 폐지 요구
 - ② 시공무원의 파견인사 철회하고 복귀조치 요구
 - ③ 상임이사의 정수규정에 위배되므로 이사 추가 위촉 요구
 - ④ 공사 임원 전원의 성명과 주소를 등기 요구
 - ⑤ 임원 변경사항을 2주일 이내 변경등기 요구

【소개의원 의견 요약】

- 부산교통공사가 부산시의 인력적체 해소 정도로 인식되거나 부산시에 의하여 거의 직영되다시피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 부산교통공사가 관련법령과 조례의 규정이 아닌 부산시장이나 부산교통공사 사장의 임의적 판단에 의하여 경영되고 있다.
- 부사장제도는 폐지, 파견공무원은 복귀조치 등 시의회가 부산교통공사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자로 나설 것을 제안한다.

II. 청원항목별 보고

Ⅰ 부사장제도 폐지요구 건

- 청원요지 : 조례 및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부사장제도 폐지
- 현황(관련 규정)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제5조(임원)

①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의 정수는 15인 이내로 한다.

인에 대한 구분에 불과하며, 동 규정 제13조(기구)의 기구상에는 기획본부, 경영본부, 운영본부, 건설본부 등의 본부장제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직제상의 기구에는 부사장제는 없음

② 시공무원(오홍석 이사관) 파견인사 철회 요구 건

○ 청원요지

-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상에는 공무원 파견을 규정하지 않았으며, 공사의 독립경영이 저해되는 등 시공무원 파견은 부당

○ 공무원 파견현황

직 급	성 명	파견기간	비고
지방이사관	배 영 길	'05. 7.29 ~ '06. 7.28	'06.2.1 복귀, 교육파견
지방이사관	오 홍 석	'06. 2. 1 ~ '07. 1.31	

○ 관련사항 검토

- 공무원의 파견근무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 「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3의 규정에 의거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 소속 공무원을 파견근무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
- 상위법과 규정이 중복되는 점을 감안, 별도로 조례상에 공무원 파견 규정을 두지 않았음
- 부산교통공사는 건교부 산하 국가공단에서 18년만인 '06. 1. 1
우리시 산하 지방공사로 환원된 기관으로 대중교통망의 동맥이라 할 수 있는 지하철 건설, 대중교통환승체계 구축, 국·시비 재정지원 등 거의 대부분의 업무가 시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 시와 교통공사간의 원활한 업무협조체제 유지와 기관간의 각종 현안문제 해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 공무원을 파견하였음 ※ 부산교통공단 이사장으로부터 파견요청 : '05.7.20

○ 검토결과

- 우리시 공무원의 파견은 시와 교통공사간 업무의 원활한 협조를 위하여 파견한 사항으로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적법하게 조치된 사항임

③ 상임이사의 정수규정에 위배되므로 이사 추가 위촉 요구 건

○ 청원요지

- 부산교통공사 이사정수는 15인 이내이나 현재 이사수는 7인(사장, 상임이사 4인, 비상임이사 2)으로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므로 위촉하지 아니한 8인의 위촉직 비상임 이사를 임명 요구

㉔ 공사 임원 변경등기 요구 건

○ 청원요지

- 임원 변경(배영길→오홍석)등기를 2주일 이내에 하여야 함

○ 임원 변경현황

- 배영길→오홍석(변경일 '06.2.1, 변경등기 '06.2.21)

○ 검토결과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임원변경 등기를 2주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공사 출범 및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파악 등으로 다소 지연 등기

Ⅲ. 우리시 의견(입장)

□ 청원인의 청원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① 부산교통공사 정관의 위임에 의한 직제규정 제7조(상임이사)의

규정에 부사장이 있으나, 이는 상임이사 4인에 대한 명칭구분 임

동 규정 제13조(기구)의 기구상에는 기획본부, 경영본부, 운영본부, 건설본부 등의 본 부장제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기구상에는 부사장제는 없음

② 시 공무원의 파견은 시와 교통공사간 업무의 원활한 협조를 위하여 파견한 사항으로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적법하게 조치된 사항임

③ 상임이사 정수는 이사정수의 33.3%(5/15)로서 50% 미만에 해당되므로 「지방공기업 법시행령」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함

④ 임원 전원의 등기와 임원의 변경등기는 완료되었음

□ 시 의견(입장)

○ 부산교통공사의 '임원 전원의 등기 및 임원변경 등기' 2건은 등기완료되었으므로 청원 의 목적이 달성된 상태이며,

○ '부사장제도 폐지 요구', '시 공무원 파견인사 철회 요구', '상임이사 정수규정 위배' 등 3건은 청원인이 제시한 근거 및 주장이 사실과 다르므로 청원의 타당성이 없음